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
----------	-------

발의년월일 : 2021. 1. 15.

발의자 : 나정숙 의원 외 11명

1. 제정이유

-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에코뮤지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준용(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입법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1. 7. ~ 1. 12. (5일간)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4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붙임1】 제정조례안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 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에코뮤지엄”이란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연구·관리·전시하는 활동을 말하며,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제3조(기본원칙) 에코뮤지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에코뮤지엄은 주민 및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에코뮤지엄은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남겨준다.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방향
2. 추진방안과 지원체계
3. 민·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

4. 에코뮤지엄 센터 설치 및 운영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
2.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3.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
4. 에코뮤지엄 관련 홍보, 전시, 교육활동
5. 그 밖에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코뮤지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2.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대상과 범위
4. 에코뮤지엄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국장과 관계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에코뮤지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주민대표 혹은 관련 단체 활동가
3. 안산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코뮤지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1.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추진시행
 2.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홍보 및 안내
 3.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위한 소규모 전시 등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능력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위원회 및 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3)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556
------------	-------

제안년월일 : 2021년 1월 28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회

□ 수정이유

-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 센터를 삭제함.

□ 주요골자

- 에코뮤지엄 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제7조제4호, 제12조)
-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
(안 제6조제2항)
-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을 “시장은”으로 수정(안 제6조제3항)
-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수정 (안 제8조제3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원안의 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을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

안 제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안 제12조(원안의 제13조) 중 “위원회 및 센터 위탁”을 “위원회”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u>4. 에코뮤지엄 센터 설치 및 운영</u></p> <p><u>5. (생 략)</u></p> <p>제6조(추진사업) ① (생 략)</p> <p><u><신 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u></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원안과 같음)</p> <p>② -----.</p> <p>1. ~ 3. (원안과 같음)</p> <p><u><삭 제></u></p> <p><u>4. (원안 제5호와 같음)</u></p> <p>제6조(추진사업) ① (원안과 같음)</p> <p><u>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u></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p>

1. ~ 3. (생 략)

4. 에코뮤지엄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5. (생 략)

제8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국장과 관계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코뮤지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1.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추진시행

2.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홍보 및 안내

3.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위한 소규모 전시 등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능력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 할 수 있다.

1. ~ 3. (원안과 같음)

〈삭제〉

4. (원안 제5호와 같음)

제8조(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담당 실 · 국장-----

-----.
-----.

〈삭제〉

제13조(준용) 위원회 및 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생 략)

제12조(준용) 위원회 -----

----- 「안산시 소
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
-----.

제13조 (원안 제14조와 같음)